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Tax Intelligence 11월호

2026.11.2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따뜻하고 평안한 연말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11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11월호에서는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과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을 다룬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분식회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때까지 이루어지면 환급 특례의 제재 요건이 충족되고, 개정법의 적용 여부도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일이 아닌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판단을 통해 법률의 문언과 입법 목적이 해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종전 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짚어봅니다. 이어 인적분할합병에 관해서는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기존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약상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감소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아울러 주식소각 여부가 취득가액 차감에 미치는 영향과 순자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할지는 별도의 해석 쟁점으로 다룹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 (i)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후속 사업연도분 법인세에서 공제)에 연간한도(과다납부액의 20%)를 신설한 2017. 1. 1. 시행 개정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 경정청구 시기가 아니라 경정결정 시기가 기준
  (ii)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직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순자산) 감소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함
-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괌·사이판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별한도 계산에서 미국과 별개의 '국가'로 봄

[2] 전심결정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수익사업(일반분양)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청구법인이 국내·외항공사들의 항공기 좌석을 사전에 매수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쟁점거래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권해석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3. Tax News

- 정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
- 관세청, K-제조업 보호를 위한 통합단속 추진과 기업의 대응 과제

관련구성원

이창희
고문

02-316-4164
cheelee@shinkim.com

이정렬
변호사

02-316-4597
jyeollee@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